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2. 3.

다. 상정일자 : 2004. 2. 3.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나. 제안사유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세입
- 특별회계의 세출
- 회계간 전용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위임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 진반적으로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단체의 보조금.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무상귀속 국유토지의 처분 수익금.
5. 도시개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읍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9.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대금, 분양수입대금.
10. 보조금 및 융자금.
11. 차입금.
12.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13.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6. 도시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